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백화점, 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적용〉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69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백화점·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저소득·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

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 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전문점 및 면세점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과 설날 및 추석날 당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4(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의제) ①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라 특허를 받은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면세점(「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의제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준대규모점포.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백화점·

현행	개정안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u>아울렛·전문점</u> 3. <u>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u> ②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u> 1. <u>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u> 2. <u>복합쇼핑몰, 아울렛, 전문점: 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u> 3. <u>백화점, 시내보세판매장(「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u> 4. <u>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보세판매장: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u> ③ ----- --<u>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과 설날 및 추석날 당일을-----</u> -----<u>. <후단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¹⁾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 점포 중 복합쇼핑몰·아울렛·백화점·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등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173개 중 77개(44.5%)²⁾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1)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2)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평일 포함 휴무 지자체(77곳)

서울 (3)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	경기 (18)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파주시, 동두천시, 하남시, 안산시, 가평군, 의정부시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강원 (4)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울산 (3)	중구, 남구, 북구	충북 (3)	청주시, 진천군, 충주시
전북 (1)	임실군	충남 (7)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경남 (1)	합천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경북 (11)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영주시, 김천시,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부산 (16)	동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해운대구, 영도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평일로, 그 외 9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현황('24.10월)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점 (176개)			
		의무휴업 시행 (173개)			미시행 ¹⁾
		공휴일	평일	공휴일+평일 ²⁾	
합계	229	96	61	16	3 (울주·영암·연천)

주1) 준대규모점포만 출점하여 의무휴업 제도(지자체 선택사항)를 도입하지 아니함

주2) 월 2회 의무휴업 중 1회만 평일로 전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외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업태별 제한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들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설날과 추석날 당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대형마트 등의 운영시간 단축(오전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보세판매장 등의 야간 교대제 근무와 평일 의무휴업 제한, 복합쇼핑몰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규제의 대상확대는 소비자들의 주말 쇼핑·여가선택을 제한하여 불편을 증가시키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의

집객효과 감소로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백화점, 아울렛 등은 주변 상권과 경합도가 낮아 규제적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의견임.

또한,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고³⁾,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결국 주변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함.⁴⁾

유사한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나치게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백화점협회는 의무휴업 확대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근무자의 일자리 감소 및 협력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백화점에 입점한 다수의 중소기업(매장 임차인 등) 또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1

3) 대구('23.2), 청주('23.5), 서초구('24.1)·동대문구('24.2), 부산('24.5~7), 의정부('24.6)

4) 체인스토어협회 또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농어민의 매출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영업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